

## 표준초안에 관한 의견서

과제 번호	붙임3_표준초안.zip 중 (2013-1102)_표준초안.pdf
표준 초안명	위치 정보 사업자 및 위치 기반서비스 사업자간 위치 정보 보안 요구사항
의견 항목	4. 용어 정의 및 약어 4.1.3. 위치 정보 사업자
원안	위치 측위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해당한다 ※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
대안	위치 측위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동통신사 및 디지털무전기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※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
사유	기존의 무선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는 특성상 이동통신사업자만 가능하였으나 무전기 방식이 2014.01부터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음성만이 아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 디지털 무전기사업자도 추가되어야 함

회사(단체)명 : (주) 셀레트라

대표자명 : 정 용 주

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귀하